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정정보도 사례 1

2023서울조정276·277/278·279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언론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을 모두 지면에 게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고려, 지면에는 정정보도만 게재하고 인터넷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신문 소속이던 때에 회사의 승인 없이 인터넷 기사를 출고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고, 회사가 외압에 의해 보도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다가 해고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신청인이 해고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회사와 무관한 취재활동을 해왔고, 편집국장보다 연차가 높아 신청인의 기사를 게이트키퍼 할 사람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신청인은 유튜브에서 주장한 의혹과 관련해 취재원이 거짓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선정적이고 정파적 활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신문의 인터넷 기사는 '선 출고 후 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회사의 승인 없이 기사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결론과 관련해서도 보도 관련 외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근부서 발령에 반발해 평소대로 외부 취재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개설 등과 관련해서도 신청인은 회사에 외부 활동 신고 후 해당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직접 유튜브를 개설한 바 없으며, 퇴직 시까지 편집국장 직속 기자로서 국장의 데스크를 받아 기사를 출고했다고 했다.

신청인 운영 유튜브는 신문법상 언론사이며, 단독 보도와 관련해 취재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선정적이고 정파적이라고 주장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지면 게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중재부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면에는 정정보도를, 인터넷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모두 게재하는 합의를 제시했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의 ‘……’보도는 한국언론의 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의 대표 강□□ 기자는 ○○신문 해직기자다. 과거 독재권력에 의해 강제로 해직된 기자와 다르다. ‘사규위반’으로 징계받아 해고됐다.

발단은 20XX년 X월 강□□ 기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사를 ‘단독’이라며 홈페이지에 올린 사건이다. **[중략]**

○○신문 강□□는 20XX년 여름 ◇◇◇ 전 ◇◇◇◇이 정계에 뛰어들 무렵 ‘◇◇◇ 검증’이라며 많은 의혹을 주장했다. ○○신문 편집국은 강□□의 주장을 대부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그러나 강□□는 ‘회사가 (◇◇◇과 유착한) ☆☆의 외압으로 보도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거듭되고 쌓여 20XX년 X월 해고됐다. **[중략]**

강□□는 이미 해고 3년 전인 20XX년부터 ‘▽▽▽▽ 유튜브 ▽▽▽▽▽▽’를 만들어 회사와 무관한 취재활동을 해왔다. **[중략]**

○○신문은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의 유튜브 활동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강□□ 입장에선 ○○신문보다 유튜브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자신이 확신하는 의혹을 마음대로 폭로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유튜브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파성이 강할수록, 선정적일수록 수입은 늘어난다. **[중략]**

강□□는 ◎◎그룹이 인수해 의욕적으로 투자하던 19XX년에 입사한 왕고참으로, 퇴사할 당시 편집국장보다 2년 선배였다. 강□□의 기사를 게이트키퍼 할 사람이 없었다. 열악한 전통매체 ○○신문은 기자 강□□를 잡을 힘이 없었고, 미디어의 신세계 유튜브는 정파성 기자에게 꿈의 무대를 제공했다. 그 결과 전국민이 <<<<의 거짓말에 농락당했다. <<<< 본인은 물론 남자친구와 변호사까지 ‘거짓말’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일간신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 가짜뉴스 시대, 진짜뉴스 읽기 5가지 팁”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 강□□ 기자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 매체에서 활동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는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사로 등록된 신문사로 선정적이고 정파적인 보도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인터넷신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 가짜뉴스 시대, 진짜뉴스 읽기 5가지 팁”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 강□□ 기자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 매체에서 활동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는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사로 등록된 신문사로 선정적이고 정파적인 보도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20XX년 ▽▽▽▽▽를 설립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 정식으로 외부활동 신고를 하고 ▽▽▽▽▽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강□□ 기자는 “20XX년 정직 X개월 처분을 받을 당시 ○○신문은 인터넷기사의 경우 ‘선 출고 후 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사를 출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직처분과도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 취재와 관련해 “제보자인 <<<<의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해 현재도 취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지면(26면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 주요 뉴스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위 섹션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2

2023경기조정66·67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사립 공공도서관의 정치적 편향 활동 의혹 보도와 관련, 정정된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재단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시 예산 1억 640만 원이 지원되었고, 이는 사립 작은도서관 평균 지원액 1,380만 원 대비 7배 이상 높은 금액임에도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도에 신청했다가 도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한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민정치학교를 개교하여 도서관장이 강연을 진행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편향된 활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도서관 지원금 1억 640만 원은 야간 개관과 자료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1,380만 원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예산 재원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시 지원금은 총 4,160만 원이라고 했다. 또한, 신청인은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예산 복원을 위한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예산 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을 뿐 흑색선전을 한 바 없고, 시민정치학교는 임대료를 받고 장소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며, 도서관장 강연은 도서관의 역할을 소개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음에도 재단이 마치고 선거 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보도해 재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원금 재원의 구분과 강의 날짜 오기 부분 등은 정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서관이 ○○시의 예산 삭감에 반발해 흑색선전을 했다는 것과 정치적, 파당적 활동을 해왔다고 묘사한 부분은 ○○시 보도자료 및 시도의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분이며, 도서관 측의 입장을 취재하고자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중재부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정정보도를,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제1부 언론조정현황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법파

조정대상보도

[전략] 올해 △△△△도서관에 ○○시의 예산 1억 640만 원이 지원된다. 사립 작은도서관(지원신청 도서관 50곳)에 도서관별로 평균 1,380만 원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19년에는 1억 1천만 원, '20년에는 1억 4천만 원, '21년에는 1억 4,890만 원, '22년에는 1억 5,170만 원이 지원되었다. 더구나 △△△△도서관은 올해 추가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신청했다가 □□도 의회에서 부결되어 ○○시로 넘어왔다. [중략]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측에서는 마치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한 것처럼 흑색선전을 늘어놓고 있다. [중략]

시에 따르면 △△△△도서관은 20XX년 제X회 전국지방 선거에 앞서 A당 소속 ◇◇◇ 국회의원과 함께 '☆☆ 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했다. ◇ 의원과 ▽▽▽ 관장은 '정치와 ☆☆ 공동체'란 주제로 강연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도서관, 쟁점의 진실은 무엇인가?” 기사 관련

본문내용: 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올해 △△△△도서관에 ○○시 예산 1억 640만 원이 지원되고, 추가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신청했다가 □□도의회에서 부결되어 ○○시로 넘어왔으며, 작년까지 지원받았던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예산의 삭감에 관련하여 마치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한 것처럼 흑색선전을 늘어놓았으며, 20XX년 제X회 전국 지방선거에 앞서 A당 소속 ◇◇◇ 국회의원과 함께 '☆☆ 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해 ◇ 의원과 ▽▽▽ 관장이 '정치와 ☆☆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XX년 ○○시가 △△△△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1억 640만 원이 아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160만 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등 총 4,16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20XX년 제X회 전국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학교를 개교한 것이 아니라 20XX년 XX월에 시민정치학교의 공간 대관 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받고 대관하였으며, ▽▽▽ 관장이 강사로 참여한 강의 날짜는 20XX년 XX월 X일로 강의 제목도 보도와는 달리 '지역을 바꾸는 시민들의 실험실'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최초 24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24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3 2023서울조정2097·2098·2099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지도교수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가 역으로 기소된 전공의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기사의 일부는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구제 효과를 높인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도교수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고자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역으로 고발당해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들(기사에서는 전문의로 표시됨)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는 해당 지도교수가 해외 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기사에서 지도교수로 언급된 신청인은 제자들의 고발로 진행된 수사에서 세 차례나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 당시 제자들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였고, 신청인이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들에게 다른 의사가 대신 집도한다고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증거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날짜는 직위해제일 이전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주장은 사실이 아님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판결과 무관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법원 판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의 반론을 수용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기사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보도를,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기사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30개 매체의 기사에 대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수정, 열람차단,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또는 취하(열람차단)로 종결되어 해당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지도교수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XX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XX일 확정했다. **[중략]**

대학병원 △△△과 전문의로 일하던 이들은 20XX년 X월 지도교수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가 해외 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XX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환자 1명과 B씨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위를 참작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된 공소사실인 의료법 위반 혐의는 법정 고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후략]**

※ 일부 열람차단(삭제)된 부분은 조정대상보도에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지도교수 고발하며 진료기록 제출한 의사들…대법 “무죄”> 관련
본문내용: 본 기사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6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보도하며, 지도교수인 B씨가 환자와 함께 이들을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씨는 환자와 함께 A씨 등 의사 6명을 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B씨는 맞고소한 결과 A씨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뉴스통신 홈페이지 <최신기사> 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최소 24시간 동안 <최신기사>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뉴스통신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뉴스통신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수정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①>

(수정 전) 지도교수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정 후) 지도교수의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②>

(수정 전) 대학병원 △△△과 전문의로 일하던 이들은

(수정 후) 대학병원 △△△과 전공의로 일하던 이들은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③>

(수정 전) B씨가 해외 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수정 후) B씨가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B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일부 열람차단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내용 중 < …… > 문장을 삭제한다.

정정보도 사례 4

2023충북조정40·41·42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직접 취재 없이 제3자 전언 등에 기초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사안과 관련, 언론사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 청사에서 1인 시위 중인 신청인의 시위행위를 제한해 달라며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이 1심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법원 판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취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 입장을 직접 칭취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마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수용하지도 않을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에 대한 직접 취재가 아니라 군 공보관실의 보도자료 및 공무원들의 전언 등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인정하며, 신청인의 주장을 반영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에는 응하기 어렵고, 향후 취재·보도 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보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하거나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우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양측에 협의를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지난 X월 XX일 ○○지방법원 △△지원 제X민사부(판사 김□□)는 ◇◇군 청사 내에서 1인 시위 중인 L씨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이 군 직원 대표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중략]

장☆☆ 노조위원장은 “20XX년 열린청사로 개방하면서 청사 내 울타리와 정문을 없앴으나 일부 주민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다”며 “업무방해로 인한 민원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L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지법 △△지원, “▽▽ ◇◇군 청사 내 1인 시위, 내재적 한계 벗어나”」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군 청사 내에서 1인 시위 중인 L씨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이 군 직원 대표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L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과 달리, “L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표현은 L씨에 대한 개별 취재 없이 취재기자가 임의로 작성한 점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으며, 향후 취재와 보도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L씨는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본인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5

2023서울조정976·977/978·979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1. 단체, 2.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고등학교 강사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서로 다른 사건 관련 인터뷰 발언을 교차 배치하여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고,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에도 동일 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고등학교 개교 자문을 맡았던 B대학교 전 총장의 딸 O 모 씨가 A학교 전문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A학교 교장은 B대학교 전 총장의 추천으로 교장 공모에 참여하여 교장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A학교 교장은 블라인드 테스트 등 엄격한 채용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으나, 해당 심사에 참여한 다른 심사위원은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A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전문강사 선발과 관련하여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힌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공고한 바도 없고, 관련한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보도는 마치 채용 과정에 규정을 어긴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여 신청인과 신청인 학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방송과 방송사 홈페이지,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정보도와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채용 심사위원 등 다양한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공익성 및 진실성·상당성이 인정되는바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임용에서 탈락한 강사와 채용 관계자의 발언은 보도 대상이 된 채용과 별개인 2021년 채용 과정과 관련한 일임에도 보도 대상인 2022년 절차에 관한 입장인 것처럼 문장이 배치되어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 ② · ③ A 학교에서 이번에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 학교 자문을 맡았던 전 B 대학교 총장의 딸이 강사로 채용된 건데요. **[중략]**

△△교육청은 지난 2019년 A 학교 개교를 준비하면서 □□□ 전 B 대학교 총장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중략]**

이후 △△교육청은 A 학교 1회 교장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 전 B 대학교 총장의 추천으로 ◇◇◇ ☆☆대학교 ☆☆☆☆원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학교가 문을 열었고, A학교 교장은 '▽▽▽ ▽▽' 등 교과목을 신설했습니다. A 학교는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데, '▽▽▽ ▽▽' 과목 강사로 ○ 모 강사가 채용됩니다. 전 B 대학교 총장의 딸입니다.

[중략]

A 학교 교장은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테스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A 학교장: “제가 심사위원으로 면접 때 들어왔었지만 심사는 저와 외부 전문 심사위원분들이 모여서 엄정하게 근거를 갖춰서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강사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강사는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1년 A 학교 강사 채용 탈락자: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들어오시고 저희 강사들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1차 채용에서 저는 합격이 됐고 2차 채용 면접에서 저는 탈락했습니다.”] **[후략]**

④ · ⑤ · ⑥ 전 B 대학교 총장의 딸이 A 학교 강사로 채용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2년 A 학교 전문강사 채용 관계자였던 C 모 씨는 전 B 대학교 총장의 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 형식이 아닌 성명을 비롯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한편 A 학교 교장은 ○ 모 강사를 비롯한 모든 채용 과정은 전문가 입회하에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진행됐으며, 채용 공정성 훼손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단독] □□□ 전 B 대학교 총장 딸, A 학교 강사 채용 ‘논란’」 기사 등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들에서 A 학교가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지 않는 등 채용 의혹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학교 교장은 2022년 ○ 모 강사의 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 모 강사의 채용은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위 지침에는 강사 채용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A 학교 교장은 강사 채용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A학교 교장은 “자신은 개방형 공모 교장의 선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발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방송사 홈페이지 ‘<<’면 상단(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해당 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 섹션 기사목록(상단 5번째 이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보도 ②, ③, ⑤, ⑥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각 조정대상보도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피신청인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배경화면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으로 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송출 영상은 해당 방송분의 인터넷 기사, 보도문 및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에도 위 송출 영상 링크 등을 포함하여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